

부 산 가 정 법 원

제1가사부

결 정

사 건 2020브20003 양육비 직접지급

채권자, 피항고인 갑

채무자, 항고인 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병

제1심 결 정 부산가정법원 2019. 12. 30.자 2019즈기510 결정

주 문

1.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말일

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1. 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2002. 1. 15.생)을 두고 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간 울산지방법원 2010드단2435호(본소), 2010드단3810호(반소)로 재판상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22.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2. 23.부터 2022. 1. 14.까지 매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채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채무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1. 3. 확정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9. 11. 11. '채무자가 2019. 7.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19년경부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이 너무 어려워졌고 사건본인이 2020. 4.경 입대 예정으로 양육비 감소가 예상되어 장래 양육비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에 관한 것, 즉 압류의 경합과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의 주장 및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제1심 결정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채무자가 양육비 변경 심판 등 별도의 가사비송사건을 통하여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

압류채권목록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채권으로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 1의 금액에 대하여는 그 정기금 양육비의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다음의 채권에 한함.

다 음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